

수원지방법원 2020. 2. 6 선고 2019가단52880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

담당 변호사 김희성, 김민재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 2019. 12. 19

판결 선고 2020. 2. 6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이 법원이 2019카정10017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2019. 6. 10.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. 7.21. 접수 제1384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. 11. 18. 피담보채무의소멸을원인으로 한
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피고(변경 전 상호 : D 주식회사)는 유아용 제품 등을 제조,판매하는 회사이다.

원고는 2012. 7월경부터 E과 함께 피고의 수원권 지역 총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.

나.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 하여
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. 7. 21. 접수 제138419호로 채권최고액 1,000만 원,채무자 E로
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고 한다)를 마쳐 주 었다.

다. 원고는 2015. 11. 18. 피고에게 개인사업자 B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68,816,838원임을
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 증명원(이하 '이 사건 거래사실 증명원'이 라고한다)을 작성하여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4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 저당권을 마쳐
주었다.

그런데 피고가 2015. 11. 18. 미수금 액수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
확정되어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,그로부터 3년의 단 기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8. 11. 18. 시효가
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, 이 사건 근저당 권 역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의 소 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 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는 것이며, 이 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으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(대법원 1996. 10.29. 선고 95다2494 판결 참조).

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과 피고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2015 .11. 18.

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물품대금 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

없게 되어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은경

별지